LEEPS HANYANG | 한양립스 에듀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946-555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01.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1.17.(금)	2025.02.03.(월)	2025.02.04.(화)	2025.02.05.(수)	2025.02.11.(화)	2025.02.12.(수) ~ 2025.02.15.(토)	2025.02.24.(월) ~2025.02.26.(수)

Ⅰ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한양립스에듀포레.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1순위/2순위)	0	0	0				
APT무순위/임의공급/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0	0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2.03.(월)	2025.02.04.(화)	2025.02.05.(수)	2025.02.11.(화)	2025.02.12.(수)~2025.02.15.(토)	2025.02.24.(월)~2025.02.26.(수)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Ⅱ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택과 - 1562호(2025.01.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26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총 470세대 중 일반분양 118세대 [특별공급 21세대(기관추천 3세대, 다자녀가구 9세대, 신혼부부 6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4000747	01	84.9680A	84A	84.9680	25.9524	110.9204	66.4514	177.3718	53.7738	4	-	-	-	-	-	-	4	1
		02	84.8642B	84B	84.8642	24.9098	109.7740	66.3702	176.1442	53.7081	16	1	1	2	-	1	5	11	2
		03	84.9904C	84C	84.9904	25.4737	110.4641	66.4689	176.9330	53.7880	22	2	2	3	-	1	8	14	1
		04	84.9636D	84D	84.9636	25.0876	110.0512	66.4479	176.4991	53.7710	7	-	-	1	-	-	1	6	2
		05	89.5130A	89A	89.5130	26.9104	116.4234	70.0060	186.4294	56.6502	31	-	3	-	-	-	3	28	-
		06	89.5204C	89C	89.5204	26.4285	115.9489	70.0116	185.9605	56.6549	38	-	3	-	1	-	4	34	-
	합 계										118	3	9	6	1	2	21	97	6

타입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층 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5%) 1차 계약 시	중도금(60%) 1회(10%) 25.10.28	2회(10%) 26.01.28	3회(10%) 26.04.28	4회(10%) 26.07.28	5회(10%) 26.11.28	6회(10%) 27.02.26	잔금(35%) 입주지정기간내(입주시)
84A	4	1층	-	118,953,000	352,047,000	-	471,000,000	23,55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64,850,000
		2층	1	120,216,000	355,784,000	-	476,000,000	23,8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66,600,000
		3층~4층	-	121,479,000	359,521,000	-	481,000,000	2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5층~8층	1	122,741,000	363,259,000	-	486,000,000	2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9층~14층	-	124,257,000	367,743,000	-	492,000,000	2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15층~24층	1	126,025,000	372,975,000	-	499,000,000	2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최상층	1	141,936,000	420,064,000	-	562,000,000	28,1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96,700,000
84B	16	1층	2	117,943,000	349,057,000	-	467,000,000	23,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2층	6	119,206,000	352,794,000	-	472,000,000	23,6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65,200,000
		3층~4층	1	120,468,000	356,532,000	-	477,000,000	2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5층~8층	-	121,731,000	360,269,000	-	482,000,000	2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9층~14층	3	123,247,000	364,753,000	-	488,000,000	2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15층~24층	3	125,014,000	369,986,000	-	495,000,000	2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최상층	1	140,925,000	417,075,000	-	558,000,000	27,9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95,300,000
84C	22	1층	1	118,701,000	351,299,000	-	470,000,000	23,5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64,500,000
		2층	2	119,963,000	355,037,000	-	475,000,000	23,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3층~4층	1	121,226,000	358,774,000	-	480,000,000	2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5층~8층	2	122,489,000	362,511,000	-	485,000,000	2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69,750,000
		9층~14층	5	124,004,000	366,996,000	-	491,000,000	2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15층~24층	9	125,772,000	372,228,000	-	498,000,000	2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최상층	2	141,683,000	419,317,000	-	561,000,000	28,05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96,350,000
84D	7	1층	2	117,943,000	349,057,000	-	467,000,000	23,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2층	1	119,206,000	352,794,000	-	472,000,000	23,6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65,200,000
		3층~4층	-	120,468,000	356,532,000	-	477,000,000	2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5층~8층	1	121,731,000	360,269,000	-	482,000,000	2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9층~14층	2	123,247,000	364,753,000	-	488,000,000	2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15층~24층	-	125,014,000	369,986,000	-	495,000,000	2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최상층	1	140,925,000	417,075,000	-	558,000,000	27,9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95,300,000
89A	31	1층	-	125,267,000	337,030,000	33,703,000	496,000,000	2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2층	-	126,527,000	340,430,000	34,043,000	501,000,000	25,05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75,350,000
		3층~4층	4	127,787,000	343,830,000	34,383,000	506,000,000	25,3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77,100,000
		5층~8층	8	129,058,000	347,220,000	34,722,000	511,000,000	2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9층~14층	13	130,570,000	351,300,000	35,130,000	517,000,000	2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15층~24층	6	132,334,000	356,060,000	35,606,000	524,000,000	2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최상층	-	148,243,000	398,870,000	39,887,000	587,000,000	29,35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205,450,000
89C	38	1층	-	124,763,000	335,670,000	33,567,000	494,000,000	2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2층	-	126,023,000	339,070,000	33,907,000	499,000,000	2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3층~4층	5	127,283,000	342,470,000	34,247,000	504,000,000	2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5층~8층	10	128,543,000	345,870,000	34,587,000	509,000,000	2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9층~14층	15	130,066,000	349,940,000	34,994,000	515,000,000	2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15층~24층	8	131,830,000	354,700,000	35,470,000	522,000,000	2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최상층	-	147,739,000	397,510,000	39,751,000	585,000,000	29,25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204,750,000

Ⅲ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 공통 유의사항" p1~2 참조)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광주광역시 포함)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Ⅳ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광주광역시 포함)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Ⅴ 청약신청 및 당첨자발표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2025.02.0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 견본주택 방문 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025.02.04.(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2.05.(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일정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 일시 : 2025.02.1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2순위	

Ⅵ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서류 제출 장소	문의 전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체결	2025.02.24.(월) ~ 2025.02.26.(수)(10:00~16:30)	한양립스 에듀포레 견본주택(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 062)946-5552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51-1340-8046-93	우리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 계약비	농협	351-1340-8096-13	우리자산신탁(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추후 통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중도금 무이자)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대출가능 여부를 비롯한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계약자가 공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계획 중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 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분양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 호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한양건설	우리자산신탁(주)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57, 3층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감북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1, 13층(역삼동)
법인등록번호	518-32-01743	200111-0013238	110111-2003236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감리
회사명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전기 : (주)조은엔지니어링/정보통신 : (주)디아이지엔지니어링/소방 : (주)유원건축사사무소
금액	2,216,390,000원	549,154,057원/258,500,000원/106,403,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7912025-101-0000100 호	38,747,8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VAT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30%) 계약시	잔금(70%) 입주지정일	비 고
84A	15,000,000	4,500,000	10,500,000	
84B	15,000,000	4,500,000	10,500,000	
84C	15,000,000	4,500,000	10,500,000	
84D	15,000,000	4,500,000	10,500,000	
89A	15,000,000	4,500,000	10,500,000	
89C	15,000,000	4,500,000	10,500,000	

[유상옵션] 1) 현관 style up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84A,B,D,89A	현관중문	3연동 수동, 패턴유리, 비산방지필름 기준	1,500,000	150,000	1,050,000	300,000	
84C,89C		스윙수동, 패턴유리, 비산방지필름 기준	1,800,000	180,000	1,260,000	360,000	C형 스윙도어
84A,89A	현관 style up	가구판넬추가+전면 거울추가 +간접조명+신발살균기	990,000	99,000	693,000	198,000	
84B			880,000	88,000	616,000	176,000	
84C,89C			990,000	99,000	693,000	198,000	
84D			990,000	99,000	693,000	198,000	

2) 거실 style up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전타입	바닥마감재	포쉐린타일(600*1200)	2,300,000	230,000	1,610,000	460,000	거실,주방,복도 (창고,팬트리제외)
84A,C,D,89A,C	아트월마감재	거실벽 아트월(600*1200)	660,000	66,000	462,000	132,000	소파반대편 벽면
84B		거실벽+복도일부 아트월(600*1200)	1,100,000	110,000	770,000	220,000	
84A,C,89A,C	벽면마감재	월장식패널(소파후면+복도쪽)	1,900,000	190,000	1,330,000	380,000	소파후면 + 복도 장식패널
84B			2,000,000	200,000	1,400,000	400,000	
84D			1,500,000	150,000	1,050,000	300,000	
84A,C,89A,C	벽면마감재 (홈바미선택시)	월장식패널(소파후면+복도쪽)	2,200,000	220,000	1,540,000	440,000	소파후면 + 복도 장식패널
84B			-	-	-	-	
84D			2,000,000	200,000	1,400,000	400,000	

3) 주방 style up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84A,89A	주방가구	상부유리플랩장, 수전,독립형 후드	1,800,000	180,000	1,260,000	360,000	
84B			2,200,000	220,000	1,540,000	440,000	
84C,89C			1,600,000	160,000	1,120,000	320,000	
84D			1,900,000	190,000	1,330,000	380,000	
84A,89A	주방벽+상판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스톤	3,600,000	360,000	2,520,000	720,000	
84B			3,400,000	340,000	2,380,000	680,000	
84C,89C			3,400,000	340,000	2,380,000	680,000	
84D			3,600,000	360,000	2,520,000	720,000	
84A,C,89A,C	홈바형 장식장	홈바형 주방 장식장	2,700,000	270,000	1,890,000	540,000	
84D			3,600,000	360,000	2,520,000	720,000	

4) 드레스룸 style up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84A,89A	드레스룸	고급형시스템선반,화장대,벽판넬,조명 등	3,400,000	340,000	2,380,000	680,000	
84B			2,800,000	280,000	1,960,000	560,000	
84C,89C			3,800,000	380,000	2,660,000	760,000	
84D			3,600,000	360,000	2,520,000	720,000	
전타입	제습기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1,200,000	120,000	840,000	240,000	

5) 욕실 style up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전타입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수납형 세면대 하부장 벽바닥 대형타일 (600*1200+600*600) 수전 및 액세서리,샤워부스 스타일업 천장형 복합환풍기,천장 간접조명등	2,900,000	290,000	2,030,000	580,000	
전타입	부부욕실		3,300,000	330,000	2,310,000	660,000	

6) 조명, 스위치 및 우물천장 style up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84A,89A	거실,주방 침실, 욕실외	-거실, 주방 조명,스위치 스타일 up 우물천장,간접등,직부등,실링팬,마그네틱조명 -각 실 전체 스위치 UP (전자식스위치,디밍기능외)	4,900,000	490,000	3,430,000	980,000	
84B			5,100,000	510,000	3,570,000	1,020,000	
84C,89C			4,900,000	490,000	3,430,000	980,000	
84D			4,900,000	490,000	3,430,000	980,000	

7)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1차중도금 (30%) 일정별도 통보	2차중도금 (40%)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고급형 (전타입)	3대	거실+침실1+침실2	5,800,000	580,000	1,740,000	2,320,000	1,160,000	LG전자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500,000	750,000	2,250,000	3,000,000	1,500,000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000,000	900,000	2,700,000	3,600,000	1,800,000	
일반형 (전타입)	3대	거실+침실1+침실2	5,200,000	520,000	1,560,000	2,080,000	1,040,000	LG전자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800,000	680,000	2,040,000	2,720,000	1,360,000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200,000	820,000	2,460,000	3,280,000	1,64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실외기실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 예정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상부세대 비확장 선택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천장 단열재 두께변경 및 시스템에어컨이 돌출시공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세대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벽체 냉매배관(거실, 침실1)이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되는 비용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전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으며, 필요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용 실외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함.

8)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전타입	냉장고 + 김치냉장고	6,000,000	600,000	4,200,000	1,200,000	LG전자
	3구 인덕션	1,200,000	120,000	840,000	240,000	
	식기세척기	1,500,000	150,000	1,050,000	300,000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함.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가구패널 마감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고, 해당 금액은 판매가격에 포함함. · 빌트인 냉장고는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변경은 불가함. · 빌트인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가전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성능개선, 디자인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인덕션 옵션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됨

9) 냉장고 수납장(빌트인 냉장고 + 김치냉장고 선택시 필수 선택)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전타입	냉장고 수납장	냉장고 수납장 +인출 텐덤박스	1,500,000	150,000	1,050,000	300,000	

· 냉장고 수납장은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선택시 필수 선택 사항임. · 빌트인 가전제품 미선택시는 본 시공시 기본형 냉장고장으로 설치됨.

10) 프리미엄환기

(단위 : 원 / VAT 포함)

타입	설치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70%) 일정별도 통보	잔금(20%) 입주지정일	비 고
전타입	프리미엄 환기	1,800,000	180,000	1,260,000	360,000	LG전자

• LG프리미엄환기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LG프리미엄환기장치의 설치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LG프리미엄환기 및 기본형 환기장치는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LG프리미엄환기의 필터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권장해드리나 외부환경에 따라 교체주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LG프리미엄환기장치의 작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LG프리미엄환기장치는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LG프리미엄환기는 옵션 계약기간 이후 추가 및 취소 불가합니다. • LG프리미엄환기장치는 LG시스템에어컨과 별도의 연동을 통한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양립스 에듀포레 시행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시공 **HY 한양건설**
84㎡A·B·C·D ~ 89㎡A·C | 지하 2층 ~ 지상 25층 / 10개동 총 470 중 118세대
062 946-5552

CMYK